

 <b>한국소비자원</b> Korea Consumer Agency	<h1>보도자료</h1> <p>“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p>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b>하나 된 열정</b> <b>하나 된 대한민국</b> 	
<b>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b>			
<b>배포일</b>	2017년 12월 6일(수) (총 9쪽)	<b>담당부서</b>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b>담당자</b>	신국범 팀 장 (043-880-5631) 고태상 선임연구원 (043-880-5633)

##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 필요 -

최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향기요법(Aromatherap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시중 유통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식물의 꽃, 잎, 열매, 껍질, 뿌리 등으로부터 추출한 방향성을 가진 휘발성 정유(精油)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방향제용 13개\*,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을 대상으로 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방향제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자가검사를 받은 제품

### □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대한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롤이 검출되었다.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2개 제품(92.3%)에서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0.1%)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4%~최대 5.8%)이, 13개 전제품에서 동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롤(최소 0.7%~최대 60.3%, 2018.12.1. 시행 예정)이 검출되었다.

\*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한 규정(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Regulation)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7개(입욕제·마사지제 각 1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 전제품에서도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하는 리모넨(최소 0.25%~최대 50.6%)과 리날롤(최소 0.02%~최대 30.9%)이 검출되었다.

[ 아로마 에센셜 오일 리모넨 및 리날롤 검출 현황 ]

구분	항목	표시기준	기준농도(%)	검출범위(%)	기준 초과 제품수
방향제용	리모넨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	0.1	0.4~5.8	12
	리날롤			0.7~60.3	13
화장품용	리모넨	국내 화장품 표시기준(권장)	0.01	0.25~50.6	2
	리날롤			0.02~11.6	2
화장품 원료용	리모넨			1.03~12.3	5
	리날롤			3.62~30.9	5

- ‘리모넨(d-limonene)’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눈·기도의 자극과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음.
- ‘리날롤(linalool)’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제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주의사항 표시하지 않아

유럽연합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포장에 해당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화장품(씻어내는 제품은 0.01%, 그 외의 제품은 0.001% 이상)은 해당 ‘물질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제품 모두 알레르기 유발 물질명이나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고, 화장품 원료용 5개 제품도 알레르기 유발물질명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방향제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이 부재하고, 화장품은 표시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방향제로 자가검사 받고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하는 제품 많아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생산·수입자는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자가검사)하고 눈·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개 중 10개 제품(76.9%)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화장품 용도로 판매한 사례 ]

### 마사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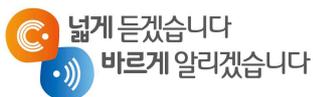
온몸의 긴장을 풀어 풀어주는 바디 마사지,  
거칠어진 피부를 정돈하기 위한 얼굴 마사지 등.  
에센셜 오일의 유효한 성분이 직접 피부에 스며들기 때문에 효과가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캐리어오일 10~50ml에 에센셜오일을 1~10방울 정도  
섞은 후 전신 또는 신체 부위에 마사지 합니다.

### 반신욕.족욕시

캐리어오일 5ml에 10방울 정도를 섞은후 욕조에 넣고  
15~20분정도 입욕하면 피로를 풀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  
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http://www.kca.go.kr)



## < 붙임 >

### 1 아로마 에센셜 오일 일반 현황

- (정의) 식물의 꽃, 잎, 열매, 껍질, 뿌리 등으로부터 증류·용매추출·압착 등의 방법으로 얻어지는 방향성을 가진 휘발성 정유(精油)임.
- (효능) 피부에 자극을 주어 몸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자극 촉진 작용', 피로를 풀고 심신을 이완시키는 '진정 작용',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하는 '최음 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사용방법) 방향제용(향기 확산법, 디퓨저법 등) 및 화장품용(마사지법, 목욕법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 [ 아로마 오일 사용방법 ]

사용방법	내용
향기 확산법	아로마 오일을 희석한 물을 캔들 또는 램프를 이용하여 가열·기화시키거나 전용 가습기 등으로 분무하여 향을 맡는 방법
디퓨저법	용매에 아로마 오일을 섞은 후 막대를 꽂아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 발향시켜 향을 맡는 방법
마사지법	캐리어 오일에 아로마 오일을 섞은 후 전신 또는 신체 일부에 도포하여 마사지하는 방법
목욕법	아로마 오일을 희석한 물에 입욕하는 방법

#### 관련규정

##### ○ 방향제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구분	한국	유럽연합
관련규정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환경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 (CLP Regulation)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기준 부재	과민성 물질의 농도가 0.1%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은 포장에 물질명과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제품의 1차 또는 최소 단위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주의사항' 등과 '자가검사표시\*'를 한글로 표시해야 함.

\* 2016.9.30. 이전 생산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표시'를 표시

[ 자가검사표시(예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  
자가검사번호 :

[ 눈, 피부 접촉 관련 주의사항(예시) ]

- 사람이나 음식물에 직접 분사하지 마시오.  
- 내용물이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 화장품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구분	한국	유럽연합
관련규정	화장품법 및 동법 시행규칙	화장품 규정 Regulation (EC) No 1223/2009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는 성분들이 화장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씻어내는 제품은 0.01% 그 외의 제품은 0.001% 이상)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 표시하도록 <b>권장</b>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는 성분들이 화장품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씻어내는 제품은 0.01% 그 외의 제품은 0.001% 이상)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 표시하도록 <b>의무화</b>

[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26종 ]

번호	물질명	번호	물질명	번호	물질명
1	아밀신남알	10	신남알	19	벤질벤조에이트
2	벤질알코올	11	쿠마린	20	시트로넬롤
3	신나밀알코올	12	제라니올	21	핵실신남알
4	시트랄	13	하이드록시이소핵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22	리모넨
5	유제놀	14	아니스에탄올	23	메칠2-옥티노에이트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15	벤질신나메이트	24	알파-이소메칠이오논
7	이소유제놀	16	파네솔	25	참나무이끼추출물
8	아밀신나밀알코올	17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26	나무이끼추출물
9	벤질살리실레이트	18	리날롤		

-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사항)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명칭', '제조판매업자 상호 및 주소', '전성분', '제조번호' 등을 한글로 표시해야 함.

## 2

## 아로마 에센셜 오일 실태조사 결과

■ 조사대상 :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방향제용 13개,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 제품

■ 시험 검사 항목 및 방법 :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량

시험항목	시험방법
리모넨, 리날롤 함량	방향제류 함유 착향성분, 살생물성분 등 물질 분석 표준시험절차*

\* 화장품에 대한 리모넨, 리날롤 시험방법은 없어 방향제용 제품 시험방법을 준용함.

■ 실태조사 항목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사용용도

### □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량) 조사대상 13개 전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 및 리날롤이 검출됨.
- 12개 제품에서 리모넨(0.4~5.8%)이, 13개 제품에서 리날롤(0.7~60.3%)이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0.1%)을 초과함.

#### [ 방향제용 아로마 오일 리모넨 및 리날롤 검출 범위 및 제품수 ]

구분	구분	기준농도(%)	검출범위(%)	기준초과 제품수
리모넨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	0.1	0.4~5.8	12
리날롤		0.1	0.7~60.3	13

\* 리날롤은 2018.12.1. 시행 예정

- 리모넨(d-limonene)은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 및 화장품 규정에 따라 피부 자극성/과민성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분류됨. 증기가 실내에 축적되면 눈, 기도에 자극적일 수 있고,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음.
- 리날롤(linalool)은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 및 화장품 규정에 따라 피부 과민성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분류됨. 고농도로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음.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0.1%)을 초과하여 리모넨이 검출된 12개 제품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음.
- (사용용도) 조사대상 13개 중 10개 제품은 '마사지제', '목욕제' 등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하고 있었음.

- 화장품 검용 사용을 광고하고 있는 10개 제품은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한 리모넨과 리날롤이 검출되었으나, 성분명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음.

### [ 방향제용 아로마 오일을 화장품 용도로 판매한 사례 ]

<p><b>마사지법</b>  온몸의 긴장을 풀어 풀어주는 바디 마사지,  거칠어진 피부를 정돈하기 위한 얼굴 마사지 등.  에센셜 오일의 유효한 성분이 직접 피부에 스며들기 때문에 효과가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캐리어오일 10~50ml에 에센셜오일을 1~10방울 정도  섞은 후 전신 또는 신체 부위에 마사지 합니다.</p>	<p><b>반신욕.족욕시</b>  캐리어오일 5ml에 10방울 정도를 섞은후 욕조에 넣고  15~20분정도 입욕하면 피로를 풀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p>
---	--

#### □ 화장품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

-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량) 조사대상 2개 제품에서 리모넨(0.25~50.6%) 및 리날롤(0.02~11.6%)이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하여 검출됨.

### [ 화장품용 아로마 오일 리모넨 및 리날롤 검출 범위 및 제품수 ]

구분		표시기준	기준농도(%)	검출범위(%)	기준초과 제품수
화장품용	리모넨	국내 화장품 표시기준(권장)	0.01	0.25~50.6	2
	리날롤			0.02~11.6	2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조사대상 화장품 2개 제품 모두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물질명(리모넨, 리날롤)을 표시함.

#### □ DIY용 화장품 원료 아로마 에센셜 오일

-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량) 조사대상 5개 제품에서 리모넨(1.03~12.3%) 및 리날롤(3.62~30.9%)이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권장 표시기준(0.01%, 씻어내는 제품)을 초과하여 검출됨.

### [ DIY용 화장품 원료 아로마 오일 리모넨 및 리날롤 검출 범위 및 제품수 ]

구분		표시기준	기준농도(%)	검출범위(%)	기준초과 제품수
화장품 원료용	리모넨	국내 화장품 표시기준(권장)	0.01	1.03~12.3	5
	리날롤			3.62~30.9	5

-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조사대상 5개 전제품이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을 초과하는 리모넨과 리날롤이 검출되었으나, 물질명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음.

1. 애완동물이나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 ▶ 어린이가 아로마 오일을 마셨을 경우, 우유를 마시게 한 후 가까운 병원에 방문한다. 이때 구토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2. 감광성이 있는 아로마 오일 사용 후 바로 선탕을 하거나 햇볕을 쬐지 않도록 한다.
  - ▶ 감광성이 있는 아로마 오일을 사용한 후에는 화상 및 피부 색소 침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24시간 후 선탕을 하거나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
3. 임신부 또는 가임기의 여성은 아로마 오일 사용을 자제한다.
4. 아로마 오일은 가연성이 높은 물질이므로 양초, 성냥, 담배, 가스와 같은 불꽃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한다.
5. 아로마 오일을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사용한다.
6. 아로마 오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올리브나 참깨 기름을 면포 등에 충분히 적셔 주위 눈꺼풀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거나 찬물로 눈을 행군다.
7. 아로마 오일이 피부 자극을 일으킨 경우, 식물성 기름이나 크림을 해당 부위에 소량 바르고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한다.

1) NAHA(National Association for Holistic Aromatherapy)

## < 첨부 > 아로마 에센셜 오일 알레르기 유발물질 시험검사 결과표

### 방향제용

번호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량(%)	
	리모넨	리날롤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	0.1*	0.1*
방향제용-1	0.4	57.2
방향제용-2	3.6	24.9
방향제용-3	0.4	60.3
방향제용-4	4.6	53.5
방향제용-5	1.6	45.3
방향제용-6	1.0	34.2
방향제용-7	1.1	27.8
방향제용-8	1.1	40.6
방향제용-9	1.3	49.4
방향제용-10	0.6	9.5
방향제용-11	5.8	1.5
방향제용-12	기준 이하	0.7
방향제용-13	4.1	4.3
비고	*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 : 0.1% 이상 함유된 경우 제품에 성분 및 주의사항 표시(리날롤은 2018.12.1. 시행 예정)	

### 화장품용 및 DIY용 화장품 원료

번호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량(%)	
	리모넨	리날롤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	0.01**	0.01**
화장품용-1	50.6	11.6
화장품용-2	0.25	0.02
화장품 원료용-1	12.3	6.13
화장품 원료용-2	1.03	30.3
화장품 원료용-3	3.95	30.9
화장품 원료용-4	4.02	29.4
화장품 원료용-5	5.56	3.62
비고	** 화장품법 및 동법 시행규칙 : 화장품에 0.01% 이상 함유된 경우 제품에 성분 표시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01% 이상)	